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53

발의연월일: 2025. 3. 28.

발 의 자:문대림・주철현・윤준병

송옥주 • 박용갑 • 임호선

임오경 · 황명선 · 이병진

서삼석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농어업 부문에서의 피해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어업과 농어촌의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음. 또한, 재해의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농어가의 경영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농어업 생산기반의 약화로 이어져 국가 식량안보 및 농어촌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미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농어가가 재해 발생 시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1년부터 농어업재해보험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제도 시행 20년이 경과한 현재에도 보험 가입률이 전체 농가의 52.1%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가입된 경지면적 또한 전체 경지면적의 42.1%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의 빈도와 강도가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존 보험제도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보다 다양한 위험요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대상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현실적인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품종, 재배방식 등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며,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거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농어가가 보다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재해보험 기본계획에 보험 대상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 도록 함(안 제2조의2제2항제3호).
- 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 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3 신 설).
- 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

- 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심의 시 농림축산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3조제7항).
- 라. 정부는 매년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안 제5조제2항).
- 마.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 산정할 때 거대 자연재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와 손해평가 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재 배방식 등의 내용으로 정기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7항).
- 아. 보험가입자는 당초 손해평가를 담당하였던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 손해사정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보험사업자는 특 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11조의8제1항).
- 자. 정부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재해보험 가입 촉진과 재해대책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함(안 제28조).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제목 중 "수립·시행"을 "수립·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품목 및 대상 지역"을 "품목, 대상 지역 및 상품 개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시행에"를 "변경·시행에"로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제2조의3을 제2조의4로 하고,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시기·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4(종전의 제2조의3)제3호 중 "방법"을 "방법(농업재해에 따른

피해율의 산정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의3"을 "제2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선정"을 "선정 및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농업재해보험"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재해보험"으로, "농업인"을 "농업인, 농림축산업인단체"로, "들을 수 있다"를 "들어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확대하기"를 "매년 확대하기"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거대 자연재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할증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농어업인이 그 재해로 인한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할증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제5항 중 "손해평가인이"를 "손해평가인의"로,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을 "손해평가와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로, "정기교육"을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재배방식 등의 내용으로 정기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의8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당초 손해평가를 담당하였던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사 및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 중 "육성"을 "육성 및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전문성 제고"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도입하려는"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려는"으로 한다. 제28조 중 "교육·홍보 및"을 "교육·홍보를 하여야 하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의 <u>수립·시행</u>) ① 농림축산식	의 <u>수립·변경</u>) ①
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	
험"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	
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	
험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u>수립된 기본계</u>
	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②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및 대	3 <u>품목, 대상</u>
<u>상 지역</u> 에 관한 사항	지역 및 상품 개발
4. • 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u>시행에</u>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조의3(재해보험 등의 심의) 재해보험 및 농어업재해재보험 (이하 "재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 안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
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u>⑦</u>
<u>변경·시행에</u>
제2조의3(실태조사)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
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
여 농어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시기·방법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제2조의4</u> (재해보험 등의 심의)

- 1. 2. (생략)
- 3. 손해평가의 <u>방법</u>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 6. (생략)

- 제3조(농업재해보험심의회) ① 농 전재해보험 및 농업재해재보험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 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2조의3 각 호의 사항
 - 2. 재해보험 목적물의 <u>선정</u>에 관한 사항
 - 3. 4. (생략)
 - ② ~ ⑥ (생 략)
 - ① 심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u>농업재해보험</u>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u>농업인</u>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u>들</u>을 수 있다.

1. • 2. (연행과 같음)
3 <u>방법(농업재해에</u>
따른 피해율의 산정을 포함한
다)
4. ~ 6. (현행과 같음)
제3조(농업재해보험심의회) ①
1. <u>제2조의4</u>
2 <u>선정 및</u>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
<u> </u>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재해
<u>보험</u>
<u>농업인, 농림축산업인단</u>
<u>체</u>
들어야 한다.

⑧ (생략)

제5조(보험목적물) ① (생 략)

- ②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를 <u>확대하기</u>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① (생략)

<신 설>

② (생략)

- 제11조(손해평가 등) ① ~ ④ (생 략)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

 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8	(현행과	같음)
0	\ \\ \\ \\ \\ \\ \\ \\ \\ \\ \\ \\ \\ \	$\mathbf{E} \mathbf{U}$

제5조(보험목적물) ① (현행과 같음)

- 2 -----
- --<u>매년 확대하기</u>-----

-----.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도 불구하고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거대 자연재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할증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농어업인이 그 재해로 인한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할증을 적용할 수 있다.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1조(손해평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5 -----

- -<u>손해평가인의</u>-----
- ----<u>손해평가와 손해평가인의</u>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신 설>

⑦ (생략)

제11조의8(손해평가에 대한 이의 전신청)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 요청에따라야 한다. <후단 신설>

<u>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u>
목의 품종, 재배방식 등의 내용
<u>으로 정기교육</u>
⑥ (현행과 같음)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
수산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
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
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를 실
시할 수 있다.
<u>⑧</u>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1조의8(손해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①
<u>이 경우 보험가입</u>
자는 당초 손해평가를 담당하
였던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사
및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
른 손해사정사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
느 트벼하 사저이 언ㅇ며 이에

②·③ (생 략)

- 제25조의2(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 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 3. (생략)
 - 4.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5. (생략)

②・③ (생략)

- 제27조(시범사업)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신규 보험상품을 <u>도입</u>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 ②・③ (생 략)

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	으
할 수 있다.	